



Vol. 05

2022.05.16.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11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남형우전임 hwnam@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전문의약품에 대해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전문의약품의 제조판매 및 수입 품목허가 등 신청 시 의무 자료 제출	전문의약품에 대해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변경승인 대상에서 변경보고 대상으로 전환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이었던 ①시험군 또는 대조군의 추가 ②임상시험 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의 변경 ③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투약방법 및 투약기간의 변경 ④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방법의 변경을 변경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였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실적 보고 대상에서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라 의약품의 생산실적·수입실적 보고 대상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함.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처리기한 단축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등을 하거나 품목신고 등을 수리하는 경우로써 의약품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만을 검토하는 때에는 종전보다 그 처리기한을 단축하였음.

(3) 시행일

‘22.04.15.

I. 법령 개정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태국 측의 협정세율 인하에 맞춰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을 새로 규정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의 변경을 반영하여 상호 대응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하였음.

(2) 주요 내용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관세율				
아세안 회원국	품목번호	품명	'21년 기본세율	'22년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태국	4002.11-0000	라텍스	8%	5%
	7117.19-1000	목걸이	8%	5%
	7117.19-2000	팔찌	8%	5%
	7117.19-3000	귀걸이	8%	5%
	7117.19-4000	브로치	8%	5%
	7117.19-5000	반지	8%	5%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	5%
	7117.19-9000	기타	8%	5%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의 부분품 으로써 제8701 호, 제8703호, 제8704.10호, 제8705호의 것	8%	0%

* '21년 태국산 물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적용배제로 기본세율 적용

(3) 시행일

'22.04.15.

I. 법령 개정사항

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등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22년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개정사항 반영	용도세율 적용신청이 (기존) 수입신고수리전 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으로 반영됨.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정사항을 반영한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의 실행관세율 정비함.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감자(칩용),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부품 제조용), 알루미늄 비합금(이차전지 제조용) 총 3 개의 품목을 신규 지정함.

(3) 시행일

‘22.05.01

II. 입안 예고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07.21.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보험 미가입 의료기기업체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기기로 인한 환자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개정('21.7.20 공포, '22.7.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가입 대상이 미가입하는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	현재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을 집행일(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일과 효력 발생일 사이 위반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변경허가 심사 항목에 대한 수수료 세분화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업무량 등이 달라 별도 항목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여야 하나, 변경사항 문서 심사 항목에서 현재 단일 항목으로 책정된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심사 수수료를 분리 및 세분화하고자 함.

구분	내용
1등급 신고제품 시험규격 확인 근거 마련	1등급 의료기기의 신고등록제 전환 이후 품질관리 확인 절차 부재 등으로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시 시험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중고의료기기의 유통현황 확인 방식 정비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 공급 시 유통현황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공급내역보고 제도를 운영('20.7')하고 있으나,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현황 파악에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공급내역보고 시 의료기기 취급자가 중고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중고의료기기 유통관리에 대한 추적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기한 및 시행 일자

의견제출기한 '22년 06월 02일 / 시행 일자 '22년 06월 중

II. 입안 예고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시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시기 개선 및 변경명령 근거 마련 등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에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자료 평가 결과 일정 기한까지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의 변경을 명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허가(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승인 제출자료 간소화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 준수사항 근거 마련 등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의 신청서류 중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정비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한 환자의 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에게는 치료목적 사용내역·안전성 정보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치료목적 사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구분	내용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절차·서식 마련 등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매년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정보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처벌대상 의약품 규정	의약품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되는 전문의약품을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으로 규정하고자 함.
원료혈장 수입 체계 정비 등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입 체계를 정비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와 원료 공급 계약에 맺고 원료혈장을 제공하는 대한적십자가 분기별로 사용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거짓·부정한 국가출하승인 시 처분기준 마련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자 및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한 후 시판 1개월 전까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각각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기한 및 시행 일자

의견제출기한 '22년 06월 13일 / 시행 일자 '22년 06월 중

III. 조세심판원 사례

1.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1.2.10. 000 소재 000(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관세율 0%)가 적용되는 신선계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000개를 2021.2.10.부터 2021.3.12.까지 000 소재 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에 장치하겠다고 2021.2.10.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21.2.10. 이를 허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2.11. 및 2021.2.12. 000으로부터 도착한 쟁점물품 000개를 AAA 주식회사에 2021.2.11. 및 2021.2.14. 반입하였고, 2021.2.13. 및 2021.2.15. 각각 처분청에 반입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2.23. AAA 주식회사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 000개 중에서 000개가 2021.2.18., 2021.2.19. 및 2021.2.21.에 수입신고 전에 무단반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최종 미회수된 000개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관세율 27%)를 적용하여 2021.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원,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 점,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에게 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그 할당관세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의 장치장소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을 반입한 장소로 「관세법」 제 172 조 제 1 항에 따라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관리 소홀로 수입신고 전에 쟁점물품의 무단반출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결정일

2022.03.29. (조심 2021 관 0083)

III. 조세심판원 사례

2.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6.9.27.부터 2017.9.20.까지 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000건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302.19-9010호(알로에 수액과 추출물, 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4.12.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 시정 안내한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에 앞서 2021.5.4.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7. 가산세 면제 불승인을 통지하여 청구법인은 2021.6.2.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2 단위 세번변경 기준임에도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정일

2022.03.29. (조심 2021 관 0102)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엑스레이 검출기 등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digital x-ray imager ; 4336R ②엑스레이 검출기 ; PEDRA-17F ; ③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43s) ④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43i) ⑤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35s)) ⑥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35i)) ⑦VJ image system ; XRD1621 ⑧Digital Radiography(QXR-9 VABH-N) ⑨Digital X-ray Detector ; Pixium RAD 4143 ; 16"x17" imaging area, Pixel size: 148 ⑩Flat panel X-ray detector ; LTA 240AA ; 17×17 인치(450×450mm)
물품 설명	신틸레이터(Scintillator)와 TFT panel(트랜지스터, 포토다이오드), A/D 변환기로 구성된 디지털 방식의 엑스레이(X-ray) 검출기
HS CODE	- 변경 전 : ①제 9022.90-1020 호 (기본관세 8%), ②~⑩제 9022.90-1090 호 (기본관세 8%) - 변경 후 : 제 9022.90-9010 호 (WTO 협정관세 0%)
변경 사유	투과된 엑스선을 신호처리가 가능한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엑스레이 검출기로, 엑스선 기기에 전용되는 핵심 부품이므로 제 9022.90-901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3.3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헬로키티 실내화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헬로키티 캔디미끄럼방지 실내화
	헬로키티 다나실내화
물품 설명	갑피와 바깥 바닥이 단일 주조에 의해 만들어진 플라스틱 재질의 아동용 실내화로 발뒤축이 갑피로 덮여 있는 형상
HS CODE	- 변경 전 : 제 6402.99-1000 호 (기본관세 13%) - 변경 후 : 제 6402.99-9000 호 (기본관세 13%)
변경 사유	발등과 발뒤축이 덮인 형상으로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어 제 6402.99-900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3.3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Air Cleaner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PORTABLE AIR PURIFIER, A5
	Dr.Luft Forest Therapy Air Cleaner (공기청정산림욕기)(38DL100S)
물품 설명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그 에너지로 대기 중의 공기를 이온화시켜 유해세균 등을 제거하는 방식의 공기 청정기
HS CODE	- 변경 전 : 제 8421.39-1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543.70-209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이온(전하를 띤 입자)을 만들어 내는 기기로 이온의 전기적 특성이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제 8543.70-209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3.3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4.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Toilet spray; JAPAN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전)
물품 설명	압축공기를 이용해 그 압력으로 화장수를 미세하게 분사하는 스프레이건 형태의 기기로 가정 등에서 사용
HS CODE	- 변경 전 : 제 9616.10-0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424.20-900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향수용(scent) · 화장용(toilet)이 아닌 화장품(cosmetics)을 분사하는 기기이므로 제 8424.20-9000 호에 분류 (제 2022년 제 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3.3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5. Limiting Thermostat 등 6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THERMOSTAT
	Thermostat ; HB2 Series
	Thermostat ; HB7
	Thermostat ; HB52
	BIMETAL THERMOSTATS ; ET-80
	BIMETAL THERMOSTATS ; ET-80
물품 설명	원통형 베이스 내부에 바이메탈(Bi-metal) 디스크와 가이드 핀(pin), 구리합금의 접점부 등을 갖고 있는 제품
HS CODE	- 변경 전 : 제 9032.10-2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536.50-9090 호 (WTO 협정관세 1.6%)
변경 사유	기계 주변의 온도가 일정 임계값(°C)을 넘으면 바이메탈의 특성을 이용해 전기회로 접점을 열고 정상온도가 되면 접점을 닫는 전기회로 개폐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 8536.50-909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3.3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6. CPU Cooler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 AMD COOLER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 공랭 CPU 쿨러; APEX4; PR.CHNA
물품 설명	CPU 등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쿨링팬(fan)과 히트싱크(방열판), 히트파이프(냉매)으로 구성
HS CODE	- 변경 전 : 제 8419.89-902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414.59-2000 호 (WTO 협정관세 1.6%)
변경 사유	팬(fan)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컴퓨터 밖으로 방출시켜 열을 발산하는 쿨링팬에 주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 8414.59-200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3.3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7. Auto Focus Actuator 등 3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OIS(Optical Image Stabilizer) Actuator ②Auto Focus Actuator ③Auto Focus Actuator ; AM7-113-40D2
물품 설명	구동장치(액추에이터)와 IR 필터가 결합된 스마트폰 카메라 용의 렌즈로, 셔터나 이미지 센서 등은 없음
HS CODE	- 변경 전 : ①제 8529.90-9500 호, (WTO 협정관세 0%) ②,③제 8543.90-9090 호 (WTO 협정관세 0%) - 변경 후 : 제 9002.11-909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구동장치 등은 렌즈의 의도된 광학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주된 기능은 렌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 9002.11-909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4.28.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8. Girl's underclothing 등 4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Girl's underclothing, knitted; CT JQD LOUNGE SET; MKZ2UI3001A ②Girl's underclothing, knitted; LBM 48081; MYANMAR ③Girls' underclothing, knitted; 내의 상하의 세트, C58P42; MYANMAR ④Pullov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2YY64931X; VIETNAM ⑤Women's underclothing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2YV64931X; VIETNAM
물품 설명	실내 또는 걸옷 안에 입을 수 있는 의류로 전면부에 앞트임이 없는 상의와 하의 한 벌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됨
HS CODE	- 변경 전 : ①~③제 6108.91-0000 호 (기본세율 13%) ④제 6110.30-1000 호 (기본세율 13%) ⑤제 6108.92-1000 호 (기본세율 13%) - 변경 후 : ①~③ 상의와 하의 구분하여 분류 (상의) 제 6109.10-1000 호 (기본세율 13%) (하의) 제 6104.62-0000 호 (기본세율 13%) 또는 제 6108.91-0000 호 (기본세율 13%) ④제 6110.30-1000 호 (기본세율 13%) ⑤제 6104.63-0000 호 (기본세율 13%)
변경 사유	①~③은 관세율표 제 11 부 주 제 14 호에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라도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의는 제 6109.10-1000 호에, 하의는 제 6104.62-0000 호 또는 제 6108.91-0000 호에 각각 분류하고, ⑤번 하의에 대해서는 실내복 형태에 따라 제 6104.63-0000 호에 분류 (제 2022년 제 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4.28.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9. Scree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SCREEN ; 51926671
물품 설명	차량의 엔진오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일 팬 여과장치에 장착되도록 특정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철강 재질의 거름망
HS CODE	- 변경 전 : 제 7314.49-0000 호 (WTO 협정관세 0%) - 변경 후 : 제 8421.99-9099 호 (특정 국가와의 관세 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5%)
변경 사유	오일 팬 여과장치에 사용되도록 특정한 형상의 프레임을 갖춘 여과망이므로 제 8421.99-9099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4.28.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0. CAP ASM-RAD SURGE T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CAP ASM-RAD SURGE TK(94539595, C14X)
물품 설명	차량의 냉각수 탱크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캡으로, 내부에는 압력조절용 밸브가 결합되어 있음
HS CODE	- 변경 전 : 제 3923.50-0000 호 (WTO 협정관세 6.5%) - 변경 후 : 제 8708.99-900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차량의 부분품인 냉각수 탱크에 장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캡(CAP)으로, 관세율표 제 39 류 제 2 호 머목에 따라 제 8708.99-900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4.28.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1. JABRA SPEAK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JABRA SPEAK ; JABRA EVOLVE 65 STEREO BT ;
	E EARPHONE(XLINE Z7)
	BLUETOOTH HEADSET ; E200BTB
	BLUETOOTH HEADSET ; W800BTB
	HEADPHONES; PF560141BA
물품 설명	블루투스(Bluetooth)를 통해 휴대폰이나 MP3 등과 연결하여 음악, 동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무선 헤드셋으로, 음악감상 중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화를 거는 기능은 없음.
HS CODE	- 변경 전 : 제 8517.62-6090 호 (WTO 협정관세 0%) - 변경 후 : 제 8518.30-9000 호 (WTO 협정관세 4%)
변경 사유	주 기능은 재생된 음원 등을 받아 소리(음파)로 재현하는 헤드셋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 8518.30-900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4.28.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2. CONNECTOR; MQV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304153 CONNECTOR; MQV-3/3 D-F
물품 설명	공장이나 병원 등에서 배선, 배관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강 구조물인 시스템 찬넬(channel)에 사용되는 3 방향의 연결·조립용 커넥터
HS CODE	- 변경 전 : 제 7326.90-9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7308.90-9000 호 (WTO 협정관세 0%)
변경 사유	철강 구조물인 시스템 찬넬(channel)을 조립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분품이므로, 제 7308.90-9000 호로 분류 (제 2022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4.28.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 뿐 아니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법”)이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로 인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가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되었다.

법률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기준	(상시) FTA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상시) FTA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확대	(통상 피해 발생 시) ①세계적 경제·금융위기 ②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 ③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④국가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⑤그 밖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하여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美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 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 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中, 한국 기업 대상 수출원산지 증명서 기재품목 제한 취소

4월 19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 수를 현행 최대 20 개에서 그 제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FTA 협정' 관련 규정과 연합위원회 결의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며,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 수가 20 개로 제한돼 있어 수출 품목이 이를 넘길 경우 한국 기업들은 2 개 이상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						
기존		변경				
원산지증명서 제 6 번란 “6. Item number <u>(Max 20)</u> ”		원산지증명서 제 6 번란 “6. Item nuber”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품목이 최대 20 개에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³ ,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3. 철강품목의 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알림

2020년 6월 3일부터 관세청은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HS CODE 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신고서에 대하여는 신고서 접수 후 예상 오류를 통보하고 있다.

이어 관세청은 2022년 4월 19일에 신고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철강품목의 수입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을 신설하여 이를 배포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담겨진 '수입신고 가이드 온라인 조회사이트'는 ①통관포탈 (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또는 ②관세청 (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철강품목의 수입신고 가이드 신설		
수입신고 가이드	(기존)	(변경)
	HSK 1,880 개	HSK 1,974 개
예상오류 통보기준	(기존)	(변경)
	1,765 개	2,177 개
※ 예상오류 통보기준 적용일 : 2022.4.20		

신고 가이드라인_제7204.10-0000호(주철의 웨스트와 스크랩)	
항목	작성요령
품명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모델. 규격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모델, 가공상태, 재질, 형상, 사이즈 등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포장방식(권고)]'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700KG/BAG 등
성분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수입요건확인	법령별 수출입요건 비대상코드 선택 신고 (상세사유 텍스트로 추가입력 가능)